

제239회 영등포구의회
2022년도 제1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양승이 의원 대표발의】



2022. 9. 28.

運 營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玉 然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7호로 2022년 9월 18일 양송이 의원 외 3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2년 9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22.1.13.시행)으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이 의무화됨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를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 신설(안 제31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 : 생략.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22.1.13.시행)되어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이 의무화됨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를 정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1조제8항을 신설하여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를 같은 조례 제29조(상임위원의 임기)를 준용하여 선임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도록 규정함.

○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윤리특별위원회의 상설화에 따라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 사항을 규정하여 위원회 운영에 충실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책임성과 윤리성을 높이고자 상시 운영하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판단됨. 아울러 향후 특별위원회 관련 조례 및 규칙 조항들을 더욱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에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참 고 자 료

1 지방자치법

제64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 의안(議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
2. 특정한 안건을 심사·처리하는 특별위원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제65조(윤리특별위원회) 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별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지방의회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